

입양된 미성년의 귀화

· 입양한 자녀와 그의 부모가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 하남시 거주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별관에 접수하시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귀화허가신청서,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작성후 1부 복사)
2. 외국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면, 대한민국 사증면 복사본 각 1부)
3.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 뒷면 사본 1부
4. 외국인의 3.5cm×4.5cm 칼라 사진 3장
5. 입양한 양부나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 입양한 양부나 양모의 신분증 사본
6. 거민신분증 원본과 사본 1장 (중국인의 경우)
7. 전가족 기재된 호구부 원본과 사본 1부(중국인의 경우)
8. 양부 또는 양모가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입양경위서
9. 정부수입인지 10만원
10. '08.9.1. 국적통보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서류
 - 자필로 쓴 통보서 : 별첨 소정양식
 - 가족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 서류
 - ➔ 각국 호적증명 (예: 중국호구부 등), 각국 정부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예: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등), 각국 출생증명서, 각국 혼인관계증명서(예: 결혼증, 결혼사항 등재된 호구부 등)
 -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 중국호구부, 중국거민증 사본 등
 - 여권상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본국 대사관 발급증명서(확인서)
 - ※ 신청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증명서 필요 (예: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已故' 표시)

■ 접수시 담당 공무원이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본은 원본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국적관련 업무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지역번호 없이 1345

- 신청서 양식 출력 및 기타 일반사항 안내 /www.hikorea.go.kr/

통 보 서

①	통 보 유 형 (※담당 공무원 기재란)	국적취득등사건발생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국적취득(원인 : <input type="checkbox"/> 인지, <input type="checkbox"/> 재취득) <input type="checkbox"/> 귀화허가 <input type="checkbox"/> 수반취득(원인 : <input type="checkbox"/> 귀화, <input type="checkbox"/> 국적회복) - 귀화(국적회복)자와의 관계 : 의 <input type="checkbox"/> 국적회복허가 - 한국국적상실일 : 년 월 일 - 한국국적상실원인 :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취득 <input type="checkbox"/> 국적이탈 <input type="checkbox"/> 국적판정		
② 사 건 본 인 (※이하 사건본 인기재 란)	등록기준예정지 <input type="checkbox"/> 등록기준지 <input type="checkbox"/> 본 적				
	성 명	외국어(한자포함) 원지음의한글표기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등록번호		
			국적회복(취득)전 국적	본(한자)	
	기 타 사 항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③ 배 우 자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등록기준지 <input type="checkbox"/>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④ 부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등록기준지 <input type="checkbox"/>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⑤ 모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등록기준지 <input type="checkbox"/> 본 적		
	주민등록번호				
⑥ 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록기준지(본 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인)

작 성 방 법

①란 : 통보유형 (①란은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국적취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국적취득의 해당하는 유형에 를 합니다.
- . 수반취득자로서 귀화(국적회복)자와 함께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귀화(국적회복)자의 성명과 관계를 기재합니다.

②란 : 사건본인

- . **등록기준예정지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는 국적회복자등의 경우 자신의 구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던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때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에 를 하고, 제적부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본적에 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부모만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등으로 소명할 때 부 또는 모(부를 알 수 없을 때)의 **성과 본(한자 포함)**을 따를 수 있습니다.
- . 부 또는 모의 **본**을 따르고 싶은 경우에만 **본란**을 기재합니다.
- . **성명란** 중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란에는 국적취득하기 전에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해당 외국어(한자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중국의 경우에는 한자로 기재).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에 기록된 한자를 기재합니다.
- . **성명란** 중 **원지음의 한글표기란**에는 해당 외국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 성명을 소명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한글을 기재합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공문서(예: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의 성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을 같음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 ④, ⑤ 란 :

- . **배우자, 부, 모** 란에는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

⑥란 : 자

- . **자란**에는 사건본인의 자로서 성명(외국어 성명인 경우 원지음의 한글표기), 국적,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되,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등록기준지(본적)와 주민등록번호(회색부분)를 기재합니다.